

第97回(定期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第5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2面
3. 清進區域 第6地區 都心再開發區域 (建築計劃)變更(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42面

1.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12
----------	-----

제출년월일 : '99. 12. .

제 출 자 : 종 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공공시설을 법인·개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수익목적으로 직접 또는 전대 사용하는 때 사용료를 부과토록 함 (제4조)
- 나.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폐지 또는 심의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제6조)
- 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대금·대부료·감면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 (제19조, 제19조의2)
- 라.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 주민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인하 (제21조)
- 마.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공유재산의 매각시 분할납부기간 연장 및 이자율, 대부료(사용료), 변상금 요율 완화 (제21조의2, 제22조)
- 바. 주거용건물이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있어,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대부료율을 최저 요율로 완화 (제22조)
- 사. 구에서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제22조)
- 아.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최저 사용요율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 (제22조)

- 자.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을 공개입찰하였으나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제22조의2)
- 차. 건물을 포함한 토지의 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 경계가 불명확하여 토지의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부지평가액을 산출토록 함 (제24조)
- 카. 국유재산제도와 같이 공유재산도 신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를 정함 (제30조의3)
- 타. 국유재산법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이를 준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제도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함 (제60조)

3. 개정근거

- 가.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 (법률 제5647호, '99. 1. 21)
- 나.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267호, '99. 4. 30)
- 다. ○○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행정자치부 공기 13340-415, '99. 5. 31)
- 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 (서울시 재산 45500-2267, '99. 10. 9)

4. 예산수반여부 : 필요 없음

5.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탁재산의 관리) 공공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시설을 영업수익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때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제1호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를 “영 제107조”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⑪제3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제3항 각호의 1의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33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

③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중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반드시”를 “재산관리관은”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19조중 “제100조제2항제5호”를 “제100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6호중 “인정하는 지역의”를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제5호중 “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한다.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영 제100조의3제2호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인가당시의 건물소유자 또는 재개발사업 인가당시의 건물소유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재개발구역 안의 다른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 후 당초 계약체결자로부터 매매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2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재산

제2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단,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은 제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연간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2조제8항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을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로 하고, 동조 제9항중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지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 시설의”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 기업집적시설의”로, “기술연구집단지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구에서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 대한 대부료를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륜
10%이상 20%미만	10% + (증가율 - 10%) × 0.3
20%이상 50%미만	13% + (증가율 - 20%) × 0.1
50%이상 100%미만	16% + (증가율 - 50%) × 0.06
100%이상 200%미만	19% + (증가율 - 100%) × 0.03
200%이상 500%미만	22% + (증가율 - 200%) × 0.01
500%이상	25% + (증가율 - 500%) × 0.005

②구유재산을 제2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의하여 경쟁 입찰을 하였으나,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22조의3 본문중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를 “사업목적으로”로 하고, 동조제1호 나목 중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이상인 사업”으로 하며, 동조동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호나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제22조의3제2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동조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호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제22조의3제3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동조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호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건물 등의 대부료 산출기준) 건물 등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과 그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하되,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부지평가액을 산출한다.(이하 이 조에서 “부지평가액”이라 함은 동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층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사.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5.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6.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7.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로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1항 및 제3항의”로 하고, “유예할 수 있다.”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로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로(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로 등에 대한 연체료율) ①대부로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가 사유건물에 의하여 무단점유·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연체료율에 한하여 연 10퍼센트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을 “재산관리관은 대부재산의 대부정리부를”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잠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중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을 “사용할”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 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지방자치단체소유가 아닌 다수의 건물이 밀집

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8조의2제1항제4호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을 “조성한”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공장건설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3호중 “공장용지내”를 “사업장내”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문으로서”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문으로서”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2호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사업장내 재산”으로 하며, 동조동항제 4호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매각대금을 감액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9조중 “주택과 동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를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등의 적용례) 제22조제6항, 제27조제1항(단서규정)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변상금 연체료율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 ③(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5호·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6항 단서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4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건물 등의 대부료 산출 기준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 중인 자로서 다음년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 ④(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분할납부 방식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 조례 시행일까지 그 납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로써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납부하여야 하는 매각대금(기납부한 매각대금 및 연체금액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의 연장은 제21조의2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최고 기간인 20년에서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가 이루어진 기간을 제외한 기간 내에서 매매계약을 변경·체결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①구청장은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재산소재지 동장이 추천하는 마을회 또는 노인회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p>	<p>제4조(위탁재산의 관리) 공공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영업수익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때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p>
<p>제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p> <p>①~③ (생략)</p> <p>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인으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2. (생략)</p> <p>⑤ (생략)</p>	<p>제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p>1. 영 제107조 ----- ----- ----- -----</p> <p>2.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②(생략)</p> <p>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가격의 적정여부</p> <p>2. 대부료, 사용료 및 임차료의 적정여부</p> <p>3. 기부채납의 적정여부와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의 산정</p> <p>4.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p> <p>5.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p> <p>6. 기타 구유재산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②(현행과 같음)</p> <p>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p> <p>2.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p> <p>3. 기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현행	개정 (안)
<p>④~⑩(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10조(관리 및 처분) ①(생략) 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14조(사용허가부의 비치)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p> <p>제16조(불용재산의 처분) 구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7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잡종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p> <p>1.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p>	<p>④~⑩(현행과 같음)</p> <p>⑪제3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제3항 각호의 1의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10조(관리 및 처분) ①(현행과 같음) 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33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p> <p>③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4조(사용허가부의 비치)재산관리관은 ----- ----- -----</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제17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p> <p>1.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p>

현 행	개 정 (안)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따로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 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고 재산운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 -----제100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4항----- -----
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5. (생략)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인정하는 -----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잠중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
1. ~ 2. (생략) 3.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개발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4. (생략) <신 설> <신 설>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현행	개정 (안)
<p>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95조제2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3. (생략) 4.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p>②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 제> 2.~3. (현행과 같음) 4. <삭 제>
<p>③(생략)</p>	<p>③(현행과 같음)</p>
<p>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생략) 5.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p>④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현행과 같음) 5.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p><신 설></p>	<p>제21조의2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영 제100조의3제2호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 또는 재개발사업 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재개발구역 안의 다른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 후 당초 계약체결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행	개정 (안)
<p>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생략)</p> <p>②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연간 대부료는 지방세법 제19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p> <p>④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p> <p>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p> <p>2. (생략)</p> <p>⑤ (생략)</p> <p>⑥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 [단,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예규 제594호)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제외]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p> <p>⑦ (생략)</p> <p>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p> <p>⑨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지 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p>	<p>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④다음 각호의-----</p> <p>-----</p> <p>-----</p> <p>-----</p> <p>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재산</p> <p>2.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단,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은 제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25로 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p> <p>-----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p> <p>-----</p> <p>⑨ -----</p> <p>-----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p> <p>-----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할 수 있다.</p>

현행	개정 (안)																												
<p>⑩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22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	<p>⑩ (현행과 같음)</p> <p>⑩ 구에서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 대한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제22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증가율</th> <th>대부료인상률</th> </tr> </thead> <tbody> <tr> <td>10%이상 20%미만</td> <td>$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td> </tr> <tr> <td>20%이상 50%미만</td> <td>$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td> </tr> <tr> <td>50%이상 100%미만</td> <td>$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td> </tr> <tr> <td>100%이상 200%미만</td> <td>$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td> </tr> <tr> <td>200%이상 500%미만</td> <td>$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td> </tr> <tr> <td>500%이상</td> <td>$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td> </tr> </tbody> </table>	증가율	대부료인상률	10%이상 20%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20%이상 50%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이상 100%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이상 200%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이상 500%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table border="1"> <thead> <tr> <th>증가율</th> <th>대부료인상률</th> </tr> </thead> <tbody> <tr> <td>10%이상 20%미만</td> <td>$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td> </tr> <tr> <td>20%이상 50%미만</td> <td>$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td> </tr> <tr> <td>50%이상 100%미만</td> <td>$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td> </tr> <tr> <td>100%이상 200%미만</td> <td>$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td> </tr> <tr> <td>200%이상 500%미만</td> <td>$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td> </tr> <tr> <td>500%이상</td> <td>$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td> </tr> </tbody> </table>	증가율	대부료인상률	10%이상 20%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20%이상 50%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이상 100%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이상 200%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이상 500%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증가율	대부료인상률																												
10%이상 20%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20%이상 50%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이상 100%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이상 200%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이상 500%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증가율	대부료인상률																												
10%이상 20%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20%이상 50%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이상 100%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이상 200%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이상 500%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p>제22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 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p> <p>1. 전액 감면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가. (생략)</p>	<p>② 구유재산을 제2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 다만,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감액조정할 수 없다.</p> <p>제22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 사업목적으로 ----- 1. ----- 가.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안)
<p>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라. (생략)</p> <p>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p> <p>바. ~ 사. (생략)</p>	<p>나. -----이상인 사업</p> <p>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p> <p>라. (현행과 같음)</p> <p>마. 외국인-----</p> <p>바. ~ 사. (현행과 같음)</p>
<p>2. 75퍼센트 감면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나.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이상 3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생략)</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 바. (생략)</p>	<p>2. -----</p> <p>가. -----미만인 사업</p> <p>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외국인-----</p> <p>마. ~ 바. (현행과 같음)</p>
<p>3. 50퍼센트 감면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나. 고용창출효과가 100명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생략)</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p> <p>마. ~ 사. (생략)</p>	<p>3. -----</p> <p>가. -----미만인 사업</p> <p>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외국인-----</p> <p>마. ~ 사. (현행과 같음)</p>
<p>제24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건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와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건물사용자가 전용 사용하는 토지 평가액을 포함한다.</p>	<p>제24조(건물 등의 대부료 산출기준) 건물 등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p>

현행	개정 (안)
<p>(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2. 2층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p> <p>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p> <p>다. 지하층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p> <p>3.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p> <p>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p> <p>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p> <p>4.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p>	<p>물의 바닥면적과 그 이외의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하되,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물폐율을 역산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부지평가액을 산출한다.(이하 이 조에서 “부지평가액”이라 함은 동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p> <p>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대부를 받은자가 전용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으로 사용하는 면적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 _____ 총면적 (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자들이 전용으로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사용하는 총면적 해당층의 총면적 (건물의 경우는 공용 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p> <p>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p> <p>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다. 지하층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p> <p>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p>

현 행	개 정 (안)
<p>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5.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times \frac{\text{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text{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p>제2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②(생략)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p>	<p>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p> <p>5.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6.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7.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2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②(현행과 같음) ④제1항 및 제2항의 ----- -----</p>

현 행	개 정 (안)
<p>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p>	<p>----- ----- --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26조(대부료의 사용제한)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6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 · 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p>
<p>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퍼센트로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 사업지구안에 있는 토지가 사유건물에 의하여 무단점유·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연체요율에 한하여 연 10퍼센트로 한다.</p>
<p>제2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구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대부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 -----</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30조의3(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p>제38조(수의계약 매각재산의 범위) ①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을 3,3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양여 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p>	<p>제38조(수의계약 매각재산의 범위등) ① ----- ----- ----- ----- ----- ----- ----- -----</p>

현행	개정 (안)
<p>제38조의2(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p>제38조의2(매각대금의 감면) ----- ----- ----- ----- -----</p>
<p>1.~3. (생략)</p> <p>4.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 내의 재산</p>	<p>1.~3. (현행과 같음)</p> <p>4. ----- 조성한 ----- -----</p>
<p>② (생략)</p> <p>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생략)</p> <p>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p> <p>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p>	<p>1. (현행과 같음)</p> <p>2. ----- ----- 사업 ----- -----</p> <p>3. ----- ----- 사업장내 -----</p>
<p>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④ ----- ----- -----</p>
<p>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p> <p>2. (생략)</p> <p>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p> <p>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 내의 재산</p>	<p>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문으로서 -----</p> <p>2. (현행과 같음)</p> <p>3. ----- ----- 사업장내의 재산 -----</p> <p>4. 외국인 ----- ----- -----</p>
<p>5. (생략)</p> <p>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의 2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5. (현행과 같음)</p> <p>⑤ ----- ----- -----</p>
<p>1. (생략)</p> <p>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p>	<p>1. (현행과 같음)</p> <p>2. ----- ----- 사업장내의 재산 -----</p>

현행	개정 (안)
<p>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p> <p>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공장용지내의 재산</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3. ----- ----- 외국인투자 기업의 사업장내 재산</p> <p>4. ----- ----- 사업장내의 재산</p>
<p>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매년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 말까지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매각대금을 감액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제44조(청사정비계획 수립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 제></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4조(청사정비계획 수립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 제></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 부구청장, 시설관리사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택과 동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49조(정의) ----- ----- ----- 공용주택을 말한다.</p>
<p>제59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9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0조(준용) 국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60조(준용) ----- -----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p>

2.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13
----------	-----

제출년월일 : 1999. 12. .
제 출 자 : 종 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수수료 종목을 정비하고 서울시 수수료와 물가 상승지수를 감안하여 현행 수수료 요액을 조정함으로써 요금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상위 법령,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별표에 정한 수수료 종목을 정비하고 요액을 적의 조정 (안 제3조)
- 별표에 정한 수수료 종목의 삭제(광고물설치허가)에 따라 수수료 감면 내용을 규정한 본문의 관련조항을 삭제 (안 제6조)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등 해당 관련 법률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27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24종)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가. 인감에 관한 사항			
(1) 인감증명	1건	400원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미과세증명, 지방세징수유예증명	1건	500원	
(2) 세목별 과세증명	1건	500원	
(3) 건축물대장 무등재증명	1건	350원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건	350원	
(2) 무허가건물 확인원	1건	500원	
라. 사실 등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	1건	500원	
(2)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건	800원	
마.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증명	1건	350원	
(2) 무적증명	1건	500원	
(3) 거주에 관한 증명	1건	400원	
(4) 부양사실 증명	1건	350원	
(5) 영문국제결혼증명 발급 및 재발급	1건	5,000원	
바.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처분(확정)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50원	
(2) 경계명시측량(도로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1필지	7,500원	
사. 회계관계 증명			
(1) 물품납품 실적증명	1건	500원	
(2)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발급	1건	500원	
(3)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1건	500원	
아.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1건	350원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개년도/1필지	450원	
자.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및 복사			
(1) 문서의 열람	1건/1회	150원	
(2) 문서의 정정	1건	200원	
(3) 문서의 복사	1매	150원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18종)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	1건	750원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1) 출판사·인쇄소(등록, 변경등록)신청	1건	750원	
(2) 구유재산 대부(계속대부)신청	1건	1,000원	
(3) 구유재산 매수신청	1건	1,000원	
(4) 시영주택(택지)양도·양수 소유권이전 해지 승인신청	1건	550원	
(5) 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50원	
(6) 인감(신규, 개인)신고	1건	300원	
(7) 입찰참가신청	1건	1,000원	
(8) 위생관련 신고사항			
가) 위생처리업 신규 신고	1건	7,000원	
나) 위생처리업 변경 신고	1건	3,500원	
다) 세척제 제조업 신규 신고	1건	20,000원	
라) 세척제 제조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마)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규 신고	1건	7,000원	
바)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신고	1건	3,500원	
사) 장난감 제조업 신규 신고	1건	7,000원	
아) 장난감 제조업 변경 신고	1건	3,500원	
자) 이·미용사 면허증 신규 발급	1건	3,000원	
차)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2,000원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24종)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가. 원본의 열람·시청			
(1)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200원 100원	
(2) 카드·도면 등 열람	1매 1매초과마다	200원 100원	
(3)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1회 10컷초과시 1컷마다	500원 100원	
(4)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1매초과마다	200원 50원	
(5) 녹음테이프 시청			
(가)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60분 기준)	1,500원	
(나)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30분 기준)	700원	
(6)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가)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60분 기준)	1,500원	
(나)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30분 기준)	700원	
(7) 영화필름 시청			
(가)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마다(60분 기준)	3,500원	
(나)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30분 기준)	2,000원	
(8)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나.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1)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200원 100원	
(2) 카드·도면 등 열람	1매 1매초과마다	200원 100원	
(3)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1편 30분초과시10분마다	1,500원 500원	
(4)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5)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1매초과마다	200원 50원	
다.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1) 문서·대장 등 사본(1매 기준)	A3 이상 1매초과마다 B4 이하 1매초과마다	300원 100원 250원 50원	
(2) 카드·도면 등 사본(1매 기준)	A3 이상 1매초과마다 B4 이하 1매초과마다	300원 100원 250원 50원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3) 녹음테이프 복제(매체비용 별도)		5,000원	
(가)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3,000원	
(나)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4)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매체비용별도)		5,000원	
(가)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3,000원	
(나)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5)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1컷마다		
(6) 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 별도)		300원	
(가) 필름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200원	
	1매초과마다	250원	
	B4 이하	150원	
	1매초과마다	1,000원	
(나) 필름 복제	1롤마다		
(7)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500원	
(가) 사진·필름의 인화	1컷		
	1매초과마다	200원	
	3"×5"	300원	
	5"×7"	400원	
	8"×10"	6,000원	
(나)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라.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1) 문서·대장 등(매체비용 별도)		300원	
(가) 문서·대장의 사본(종이출력물1매마다)	A3 이상	250원	
	B4 이하	250원	
(나) 문서·대장의 복제	1건(10매 기준)1회	1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2) 카드·도면 등(매체비용 별도)		300원	
(가) 카드·도면의 사본(종이출력물1매마다)	A3 이상	250원	
	B4 이하	250원	
(나) 카드·도면의 복제	1건(10매 기준)1회	1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3)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매체비용 별도)		3,000원	
(4)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250원	
(가) 사진·사진필름의 사본(종이출력물)	1컷		
	1매초과마다	50원	
	3"×5"	100원	
	5"×7"	150원	
	8"×10"	5,000원	
(나) 사진·사진필름의 복제	10분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128조 및 제130조 ----- ----- -----</p>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46종)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24종)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가. 인감에 관한 사항 (1) 인감증명	1건	300원		가. 인감에 관한 사항 (1) 인감증명	1건	400원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납세증명	1건	350원	내무부세제 13400-32(94.120) 서울시지방세 제증명발급절차 개선계획 (‘94.7.6)“삭제”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미과세증명, 지방세징수유예증명	1건	500원	
(2)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미과세증명, 지방세징수유예증명	1건	350원		(2) 세목별 과세증명	1건	500원	
(3) 세목별 과세증명	1건	350원		(3)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	1건	350원	
(4) 건축물 관리대장 무한증명	1건	350원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건축허가 또는 건축 준공 검사 증명	1건	350원	건축법시행규칙 및 제10조 “삭제”	(1)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건	350원	
(2)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건	350원		(2) 무허가건물 확인원	1건	500원	
(3) 무허가건물 확인원	1건	350원		라. 마약에 관한 사항 (1)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			
라. 마약에 관한 사항 (1)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	1매	100원	마약법시행령 제9조제2항 (‘98.10.2)“삭제”				

현행				개정 (안)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마.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 (2) 생산 실적 증명 (3) 실수요자 증명 (4)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 (5) 원자재(시설재)증명 (6) 식품환경 영업허가 (휴폐업)사실증명 (7) 의료기관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550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민원사무처리실태조사결과 “삭제” 통산산업부고시 '95-92호(92.9.15) “삭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민원사무처리실태조사결과 “삭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민원사무처리실태조사결과 “삭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민원사무처리실태조사결과 “삭제”	라. 사실 등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 (2) 의료기관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1건 1건 1건	500원 800원	
바.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 변경 증명 (2) 무적증명 (3) 제적 기재사실 증명 (4) 거주에 관한 증명 (5) 부양사실 증명 (6) 외국인등록표 (재교부)신청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호적법시행규칙 제27조 100원 “삭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 “삭제”	마.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 변경 증명 (2) 무적증명 (3) 거주에 관한 증명 (4) 부양사실 증명	1건 1건 1건 1건	350원 500원 400원 350원	

현행				개정 (안)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7) 영문국제결혼증명 발급 및 재발급	1건	3,300원		(5) 영문국제결혼증명 발급 및 재발급	1건	5,000원	
사.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바.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확인원	1필지	750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14의 ④“삭제”				
(2) 지적공부상 미등재 증명	1건	350원	지적법시행규칙 제43조 “삭제”				
(3) 지적공부 정비완료 증명	1건	350원	지적법시행규칙 제44조 “삭제”				
(4) 환지증명 또는 환지 예정지 증명	1필지	450원		(1) 환지처분(확정) 증명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50원	
(5) 경계명시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1필지	5,500원		(2) 경계명시측량(도로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1필지	7,500원	
아. 회계관계 증명				사. 회계관계 증명			
(1) 물품납품 실적증명	1건	350원		(1) 물품납품 실적증명	1건	500원	
(2)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 증금 보관확인증	1건	350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사무처리실태조사결과 “삭제”				
(3) 일반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명	1건	350원		(2) 일반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발급	1건	500원	
(4) 물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건	350원		(3)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	1건	500원	
(5) 보상금 지불증명	1건	350원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의거 “삭제”				
자.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자동차 제증명	1건	1,000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제1항 [별표30] “삭제”				

현행				개정 (안)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고
차. 행정정보에 관한 증명 (1) 문서 또는 필름의 열람 (2) 문서 또는 필름의 복사 (3) 필름복제 가) 신청인 필름 부담시 나) 신청인 필름 미부담시 (4) 사진인화 8"×7" 5"×7"	1건/1회 1매 1롤마다 16m/m 35m/m 8"×7" 5"×7"	100원 100원 2,000원 7,000원 11,000원 600원 300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삭제"	아.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건 1건 1개년도 /1필지	350원 600원 450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삭제"
카.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건 1건 1개년도 /1필지	350원 600원 450원		타. 공부열람 (1) 각종 공부열람	1시간	100원	
파.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및 복사 (1) 문서의 열람 (2) 문서의 정정 (3) 문서의 복사	1건/1회 1건 1매	100원 200원 100원		자.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및 복사 (1) 문서의 열람 (2) 문서의 정정 (3) 문서의 복사	1건/1회 1건 1매	150원 200원 150원	

현행				개정 (안)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18종)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8종)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행정서사업 허가증 교부	1건	550원	행정사법 제8조에 의거 신고제로 변경 “삭제”				
(2) 도로하천 부지점용 (지하도, 지하상가, 노상주차장) 허가	1건	600원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8조(수수료의 징수) “삭제”				
(3)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500원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1조 (무료) “삭제”				
(4)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50원	도시재개발법 제6조제1항“삭제”				
(5)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	1건	550원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	1건	750원	
(6) 토지형질변경(택지 조성)행위 허가신청	1건	2,000원	도시계획법 제4조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무료) “삭제”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1)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	1건	550원		(1) 출판사·인쇄소 (등록, 변경등록) 신청	1건	750원	
(2) 공유재산 대부 (계속대부)신청	1건	550원		(2) 공유재산 대부 (계속대부)신청	1건	1,000원	
(3)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550원		(3)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1,000원	

현 행				개 정 (안)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4) 사설시장 개설 및 경신 신청	1건	550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30,000원) “삭제”				
(5) 시영주택(택지)양도 · 양수 소유권이전 해지 승인신청	1건	550원		(4) 시영주택(택지)양도 · 양수 소유권이전 해지 승인신청	1건	550원	
(6) 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50원		(5) 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50원	
(7) 인감(신규, 변경, 개인) 신고	1건	250원		(6) 인감(신규, 개인) 신고	1건	300원	
(8) 입찰참가신청	1건	550원		(7) 입찰참가신청	1건	1,000원	
(9) 급수공사신청	1건	550원	서울시수도사업 설치조례 (89.11.16)“삭제”				
(10)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1건	2,000원	서울시조례 (99.6.30)“삭제”				
	1건	1,000원					
(11)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서울시조례 (99.6.30)“삭제”				
(12)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신청			서울시조례 (99.6.30)“삭제”				

현행				개정 (안)			
3.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31종)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가. 광고류허가 및 신고 사항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1) 입간판 설치허가	1개소당	3,000원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7조 (수수료)	31개 종목 전체 폐지			
(2) 현수막 설치허가	1개소당	5,000원					
(3) 프랑카드 설치허가	1개소당	5,000원	○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6조 (허가, 신고 및 안전도검사 등 수수료)				
(4) 애드발룬 설치허가	1개소당	10,000원					
(5) 공연광고물 설치 허가	3.5㎡ 미만	20,000원	[별표 5]				
	3.5㎡ 이상	28,000원					
(6) 돌출광고물 설치 허가	허가 공연시	5,000원					
(7) 전주, 가로등주, 이용 광고물 설치허가	50개 이하	11,000원	31개 종목 전체 폐지				
(공중전화, 우표, 담배표지판, 소형 광고물류 포함)	50개 초과	22,000원					
(8) 차량이용 광고물 설치허가	내부좌석상단	11,000원					
	50매기준 차량양측면	2,000원					
(9) 지하도 광고물 설치허가	1개당	13,000원					
	5㎡ 미만	15,000원					
(10) 전단	5㎡ 이상	15,000원					
	1개당	22,000원					
	공중살포1회	3,000원					
	신고1회 (5,000매기준)						

현행				개정 (안)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1면기준	2,160,000원					
	300㎡이하						
	5개당	1,000원					
(12) 공공시설 이용 광고 허가	100매당	6,000원					
(13) 벽보지류 설치신고	3.5㎡이상	3,000원		※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14) 가로간판	4층이상설치	3,000원					
	1개당	12,000원					
(15) 지하철역 광고물	1개소당	20,000원					
(16) 지주이용 간판	1개소당	3,000원					
(17) 이·미용업소 사인 광고	1개소당	20,000원			31개 종목 전체 폐지		
(18) 주유소 안내간판 (폴싸인)	1㎡이하	5,000원					
(19) 형광류 및 네온 광고물	1㎡초과	10,000원					
	3.5㎡까지						
	5㎡초과	15,000원					
	10㎡까지						
나. 입간판(철도역)	10㎡초과	40,000원					
(1) 벽면부착(승강장)							
(2) 입간판(승강장)	1개당	4,000원					
(3) 철도연변	1개당	4,000원					
다. 고속도로휴게소 광고물	1개당	15,000원					
(1) 시계탑광고							
(2) 휴게소 안내탑	1개소당(4㎡)	30,000원					
(3) 관광안내, 기타	1개소당(4㎡)1	40,000원					
라. 비행선광고물	개소당(4㎡)	20,000원					
(1) 비행선 광고물							
마. 국민체육진흥광고물	1식	400,000원					
(1) 환경정화용 대형광고							
(2) 탑광고	1개	30,000원					
(3) 전광판광고	1개	25,000원					
(4) 시내버스 외부광고	1개	150,000					
(5) 택시표시등 광고	1대	1,500					
	10대	2,000					

현행				개정 (안)			
4. 위생관련 허가 및 신고등 수수료(47종)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공중위생법 영업 허가 및 신고사항				<삭 제>			
(1) 호텔업 신규 허가(신고)	1건	120,000원		<삭 제>			
(2) 호텔업 변경 허가(신고)	1건	60,000원		<삭 제>			
(3) 콘도미니엄 신규 허가(신고)	1건	120,000원		<삭 제>			
(4) 콘도미니엄 변경 허가(신고)	1건	60,000원		<삭 제>			
(5) 여관업 신규 허가(신고)	1건	40,000원		<삭 제>			
(6) 여관업 변경 허가(신고)	1건	20,000원		<삭 제>			
(7) 여인숙업 신규 허가(신고)	1건	10,000원		<삭 제>			
(8) 여인숙업 변경 허가(신고)	1건	5,000원	공중위생법	<삭 제>			
(9) 공동탕업 신규 허가(신고)	1건	12,000원	폐지	<삭 제>			
(10) 공동탕업 신규 허가(신고)	1건	6,000원		<삭 제>			
(11) 가족탕업 신규 허가(신고)	1건	12,000원		<삭 제>			
(12) 가족탕업 변경 허가(신고)	1건	6,000원		<삭 제>			
(13) 한증막업 신규 허가(신고)	1건	12,000원		<삭 제>			
(14) 한증막업 변경 허가(신고)	1건	6,000원		<삭 제>			
(15) 사우나탕업 신규 허가(신고)	1건	60,000원		<삭 제>			
(16) 사우나탕업 변경 허가(신고)	1건	30,000원		<삭 제>			
(17) 증기탕업 신규 허가(신고)	1건	60,000원		<삭 제>			
(18) 증기탕업 변경 허가(신고)	1건	30,000원		<삭 제>			
(19) 복합목욕탕업 신규 허가(신고)	1건	60,000원		<삭 제>			
(20) 복합목욕탕업 변경 허가(신고)	1건	30,000원		<삭 제>			
(21) 컴퓨터게임장업 신규 허가(신고)	1건	30,000원		<삭 제>			
(22) 컴퓨터게임장업 변경 허가(신고)	1건	15,000원		<삭 제>			
(23) 종합유원시설업 신규 허가(신고)	1건	60,000원		<삭 제>			
(2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 허가(신고)	1건	30,000원		<삭 제>			
(25) 기타 유키장업 신규 허가(신고)	1건	30,000원		<삭 제>			
(26) 기타 유키장업 변경 허가(신고)	1건	15,000원		<삭 제>			
(27) 이·미용업 신규 허가(신고)	1건	12,000원		<삭 제>			
(28) 이·미용업 변경 허가(신고)	1건	6,000원		<삭 제>			
(29) 위생관리용역업 신규 허가(신고)	1건	7,000원		<삭 제>			
(30) 위생관리용역업 변경 허가(신고)	1건	3,500원		<삭 제>			
(31) 세탁업 신규 허가(신고)	1건	7,000원		<삭 제>			
(32) 세탁업 변경 허가(신고)	1건	3,500원		<삭 제>			

현행				개정(안)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33) 위생처리업 신규 허가 (신고)	1건	7,000원	(33)~(40) (45),(46) 은 개정후 2.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관 으로 이동	(8) 위생관련 신고사항 가) 위생처리업 신규 신고	1건	7,000원	
(34) 위생처리업 변경 허가 (신고)	1건	3,500원		나) 위생처리업 변경 신고	1건	3,500원	
(35) 세척제 제조업 신규 허가 (신고)	1건	20,000원		다) 세척제 제조업 신규 신고	1건	20,000원	
(36) 세척제 제조업 변경 허가 (신고)	1건	10,000원		라) 세척제 제조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7)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규 허가 (신고)	1건	7,000원		마)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규 신고	1건	7,000원	
(38)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허가 (신고)	1건	3,500원		바)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신고	1건	3,500원	
(39) 장난감 제조업 신규 허가 (신고)	1건	7,000원		사) 장난감 제조업 신규 신고	1건	7,000원	
(40) 장난감 제조업 변경 허가 (신고)	1건	3,500원		아) 장난감 제조업 변경 신고	1건	3,500원	
(41) 숙박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50원		<삭 제>			
(42) 공중목욕탕 영업허가증 재교부	1건	550원		<삭 제>			
(43) 이·미용실 개설신고증 재교부	1건	550원		<삭 제>			
(44) 식품·공중위생 영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50원		<삭 제>			
(45) 이·미용사 신규 면허	1건	3,000원		자) 이·미용사 면허증 신규 발급	1건	3,000원	
(46)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2,000원		차)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2,000원	
(47) 영업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허가(신고) 수수료에 준함	1건			<삭 제>			

신 설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24종)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가. 원본의 열람·시청	1건(10매 기준)1회	200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금액)
(1) 문서·대장 등 열람	10매초과시 5매마다 1매	100원 200원	
(2) 카드·도면 등 열람	1매초과마다	100원	
(3)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1회 10컷초과시 1컷마다	500원 100원	
(4)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1매초과마다	200원 50원	
(5) 녹음테이프 시청	1개마다(60분 기준)	1,500원	
(가)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30분 기준)	700원	
(나)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6)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1롤마다(60분 기준)	1,500원	
(가)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30분 기준)	700원	
(나)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7) 영화필름 시청	1캔마다(60분 기준)	3,500원	
(가)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30분 기준)	2,000원	
(나)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컷마다	200원	
(8) 슬라이드 시청			
나.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 문서·대장 등 열람	10매초과시 5매마다 1매	100원 200원	
(2) 카드·도면 등 열람	1매초과마다 1편	100원 1,500원	
(3)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30분초과시 10분마다	500원	
(4)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5)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1매초과마다	200원 50원	
다.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1) 문서·대장 등 사본(1매 기준)	A3 이상 1매초과마다 B4 이하 1매초과마다	300원 100원 250원 50원	
(2) 카드·도면 등 사본(1매 기준)	A3 이상 1매초과마다 B4 이하 1매초과마다	300원 100원 250원 50원	

신		설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3) 녹음테이프 복제(매체비용 별도)			
(가)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나)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4)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매체비용 별도)			
(가) 1롤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나)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5)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1컷마다	3,000원	
(6) 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 별도)			
(가) 필름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나) 필름 복제	1롤마다	1,000원	
(7)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가) 사진·필름의 인화	1컷	500원	
	1매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나)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라.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1) 문서·대장 등(매체비용 별도)			
(가) 문서·대장의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 이상	300원	
	B4 이하	250원	
(나) 문서·대장의 복제	1건(10매기준)1회	2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2) 카드·도면 등(매체비용 별도)			
(가) 카드·도면의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 이상	300원	
	B4 이하	250원	
(나) 카드·도면의 복제	1건(10매 기준)1회	2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3)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매체비용 별도)	10분마다	3,000원	
(4)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가) 사진·사진필름의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나) 사진·사진필름의 복제	10분마다	5,000원	

3. 청진구역 제6지구 도심재개발구역(건축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안건명 : 청진구역 제6지구 도심재개발구역(건축계획)변경(안)

2. 도심재개발 구역변경내용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청진구역 제6지구 도심재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종로구 청진동 166번지 외 80필지 8,655.50㎡(변경 없음)

다.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 종로구 청진동 169-1번지 외 24필지 1,872.10㎡(지상, 변경 없음)
 종로구 청진동 173번지 일대 2,852.40㎡(지하, 변경 없음)

라. 건축계획 변경결정(안)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층수(층)	높이(M)	용 도	비 고
기 정	50이하	800이하	54,952이하	24이하	100이하	업무,판매,근린,주거	
변 경	변경 없음	880이하	102,492이하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마. 변경사유 : 세부적인 건축계획 수립 결과 지하층 설치에 따른 연면적 증가 및 대지 내 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의한 용적률 완화 적용으로 용적률을 증가하고자 하는 건축계획 변경임

3. 주민공람

가. 공 고 일 : 1999. 11. 15

나. 공람기간 : 1999. 11. 15 ~ 1999. 11. 29

다. 게재신문 :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청진구역 도심재개발 구역결정도



